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008호 2016년 8월 19일(금)

공 고

-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2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7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2. 제정이유

○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건축디자인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경관 디자인팀)
- 연락처 : 033-639-2766 (FAX 033-639-231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경관디자인팀(033-639-27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시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조성 사업

3. 우범·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경관 조례」에 따른 속초시 경관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속초경찰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속초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17.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8. 19. ~ 9. 2.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6. 7. 8.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함희선	
	주 소 (대장상주소)	강원도 속초시 교동 774-12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교동 627-26번지
		건축물 현 황	1층 목조 주택 51.84㎡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